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열 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공급열매체		※계약종별		※접수일			
공동주택명			공동주택소재지						
사업주체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시공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축물 현 황	공동 주택	전용면적	m <sup>2</sup>		세대발코니 확장면적	m <sup>2</sup>			
		세대수(호)		기계실수		동수			
	부대 · 복리 시설	시설명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편의시설	기 타			
		건축허가연면적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열공급면적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열공급개시요청일			※열공급개시예정일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주체) (인) 신청자(사업시공자) (인)									
<b>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b>									
주1)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발코니,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6.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 팸플릿 포함) 7.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8. 기타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주2) 열공급규정 제42조에 의거 공사비부담금은 열공급개시일 이후에는 정산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용 및 공용면적 :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업자가 검토하여 승인 통보한 열공급이 되는 면적으로 정산 완료 2. 발코니면적 :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 이전에 사용자가 제출한 열이 공급되는 발코니 합산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근거로 정산 완료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